

 국토교통부	보도 설명자료		
	배포일시	2020. 1. 6(월) / 총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·과장 이창기, 사무관 정재원·정진숙, 주무관 이동우 ☎ (044) 201-3848, 3852, 384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 보도내용 조선일보(1.6) >

- ◆ “규제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미지수인데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자랑한 정부”, “자율차 발 묶어놓고 ‘안전기준’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”
- 정부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‘안전 기준’이라는 규제 도입
- 美·中의 주요 기업들은 레벨4~5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이며, 미국에서는 이미 레벨5까지 안전기준을 담은 법안이 하원에 제출됨

- 국토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은 부분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술·성능적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.
 - 금번 안전기준에서는 기존 제도상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차로유지 기능, 수동차로변경기능을 허용함과 더불어 부분자율주행 운행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운행, 위험최소화 운행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- 또한,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.
 - 안전기준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정부는 이러한 기준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과 국제기준 제정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 - 전국 모든 도로(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)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허용(16.11)하여 국내 기업들이 시가지 도로 등 복잡한 환경에서 레벨4 이상의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
 - 국토교통부는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실증*하고, 40톤급 대형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도 연구** 중입니다.
 - *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('18~'21)
 - **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('18~'21)
 - 또한, 작년에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유상운송 실증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.
- 한편, 미국 상·하원에 제출된 법안(Self Drive Act, AV Start Act)들은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에 美 교통부가 안전기준 연구와 기준 제정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- 본 개정은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'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'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며,
 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발전전략에 따라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개발 및 제도·인프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